

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유정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「대기오염 예측·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»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국가의 미세먼지(PM-2.5)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,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개정된 미세먼지(PM-2.5) 주의보와 서울형 PM-2.5 민감군 주의보의 발령기준이 동일하여 민감군 주의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

개정 강화된 국가의 미세먼지(PM-2.5) 예보 및 경보에 대한 농도기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